

양도담보 계약서(수입거래용)

수신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제1조 양도담보권의 설정

① 설정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앞면의 “수입화물대도(T/R)신청서” 상에 기재된 선적서류가 표창하는 모든 수입 물품(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합니다)의 소유권을 채권자(대한민국내의 모든 지점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양도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폐담보채무의 표시 :

거래약정	년	월	일자	수입거래약정서
금액	금	원		
신용장번호				
지연배상금	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 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의 이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 담보목적물의 점유.보존.관리

① 담보목적물(제5조의 갈아 놓거나 새로 들어온 물건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점유.사용.보존.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설정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 범위 내에서 사용.보존.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관장소.설비.기타 관리방법에 관하여 채권자의 지시가 있으면 설정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 3조 보험 계약

①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그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이 계약에 의한 피담보채무가 존속하는 한 이를 계속 유지합니다.

② 설정자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제1항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③ 설정자가 제1항,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 비용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4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 3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 도래전일지라도,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담보 목적물의 보존 등

① 담보목적물이 멸실.훼손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정자는 그 예방 또는 침해 구조를 위한 법적절차를 취하고, 채권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거나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 설정자는 권리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5조 담보목적물의 변경

①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아 놓거나 또는 새로 물건을 들여올 때에는, 채권자의 승인을 받겠으며, 그 같아놓은 물건이나 새로 들여온 물건에 대하여도 따로 계약할 것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모두 채권자에게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합니다.

② 담보목적물에 의하여 제조, 가공되는 제공품, 반제품, 완제품, 부산물이나 양도물건에 부합된 물건도 당연히 이 계약에 의하여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합니다.

제 6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①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3 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 3 취득자를 말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②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제 7조 담보목적물의 인도, 대리 처분

①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을 지체없이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합니다.

②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이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되도록 합니다.

제8조 물상대위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멸실.훼손.공용징수.기타의 원인으로 제3자에 대한 보험금.배상금.보상금 등의 청구권이 생긴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일지라도,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담보목적물에 대한 조사

채권자는 채권보전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정자는 조사에 필요한 협력을 합니다.

제10조 비용부담

양도담보권의 설정.보전.행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존.관리에 드는 각종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때에는 설정자는 그 지급금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4조에 준하여 이를 곧 갚습니다.

제11조 다른 담보.보증 약정과의 관계

① 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설정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제 12조 특약사항

--

설정자 (인)

채무자 (인)

※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이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셨습니까?	성명 : (인)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명 : (인)